**“산악부”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산악부”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등산과 클라이밍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, 부원들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4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 5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의 선출은 선임 회장의 임명으로 선출된다

**제 6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 7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으로 구성된다.

②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1. 동아리 대표자 회의 참가 및 의결권  
2. 예산집행 승인권  
3. 징계 발의권  
4. 회칙개정 발의권  
5. 기타 중요안건에 대한 발의권  
6. 일반, 긴급 사항에 대한 즉결권  
가. 일반 사항이라 함은 본회 자체 행사 및 기타 일반 업무를 말한다.  
 나. 긴급사항이라 함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나 빠른 시행이 요구되는 사안을 말한다.

③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 8조 [집행부 회의]**

집행부 회의는 임원진 합의 하에 임의로 진행한다.

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9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1. 본 동아리의 회원은 본 동아리에 등록한 모든 이를 구성원으로 한다
2. 본 동아리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.
3. 본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,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4. 본 동아리 회원은 각종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단, 임원의 판단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.
5. 본 동아리 회원은 정기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단, 임원의 판단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.

**제 10조 [회원의 가입]**

1.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.
2. 본 동아리의 가입은 입회원서를 모두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3. 본 동아리의 가입원서 작성은 반드시 임원진과 대면으로 작성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비대면으로 작성한다.

**제 11조 [회원의 탈퇴]**

1.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2. 탈퇴 후 회비의 환급은 하지 않는다.

**제 4장 활동**

**제 12조 [정기 모임]**

1. 매달 셋째주 토요일 정기 모임을 진행한다.
2. 나머지 주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모임을 진행한다.

**제 13조 [총회]**

1. 총회는 개강총회, 종강총회로 구분한다.
2. 개강총회에서 회장은 아래의 항목을 발표 및 공지한다.  
   1. 임원진 소개  
   2. 학사일정 발표(수업, 전시회, MT 등)  
   3. 회비 공지
3. 종강총회에서 회장은 아래의 항목을 발표 및 진행한다.  
   1. 해당학기 활동 보고  
   2. 회칙 개정 투표 진행 (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시행)

**제 14조 [위험 및 책임]**

1. 본 동아리의 대부분의 활동은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.
2. 모든 활동이 이루어 때,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.
3. 운영진은 활동에 앞에 동아리 부원에게 활동의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한다.
4. 활동 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5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16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**제 17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8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징계**

**제 19조 [목적]**

동아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 회원을 제명함으로써 회원들이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지원을 받게 하고,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동아리활동을 유도한다.

**제 20조 [제명]**

정기 모임에서 운영진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안전수칙을 어겨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동아

리에 피해가 발생하는 행동을 행할 시,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2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0.03.18]

**제 2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